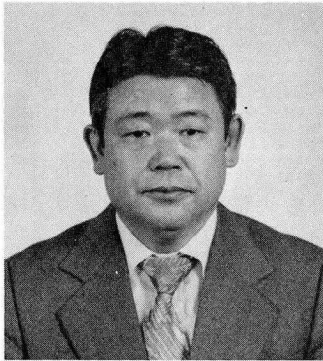


# 화재보험특약요율과



안 규 수  
〈한국손해보험요율산정회 상무이사〉

## 1. 머리말

금년 여름처럼 수마의 공포가 우리를 괴롭힌 때도 드문것 같다. 7월중순 남부지방을 강타한 태풍 셀마호를 시작으로 연속적, 집중적으로 쏟아진 폭우로 인하여 5백98명이 사망 또는 실종되고 약6천억원 이상의 재산손실을 가져온 참으로 잔인한 여름이었다. 이와같은 재해는 비단 우리나라 뿐만 아니라 대만, 소련, 이란, 인도, 중공 등에서도 크게 수해를 입은 것으로 전해지고 있으며 그리스, 터키, 이탈리아, 미국 등의 구미지역에서는 이례적인 폭우로 수해못지 않은 시련을 겪은 것으로 보도되고 있다. 금세기 후반에 들어서면서 이런 불규칙적인 기상이변은 그 징후가 도를 넘어왔고 그에따라 피해도 현저히 늘어 왔다. 환경전문가들에 의해 연구 분석된 보고서는 대기속에 이산화탄소의 함량이 급증하는등 경제성장에 따른 대기오염의 증가

를 주원인으로 보고 있으며 지구생태계에 집단적 파괴행위를 가한 결과로 보는 것이 지배적이다.

태풍, 폭풍, 폭풍우, 홍수, 범람 등의 자연재해는 피해의 규모를 예측할 수 없는 대이변이기 때문에 보험담보대상에서 오랫동안 제외되어 오다가 사회적 요구에 따라 특별약관으로 담보하게 되었지만 가입률은 극히 저조한 실정이다

## 2. 풍수재담보

풍수재위험은 보통약관 또는 특별약관으로 담보하는 두가지의 경우가 있다. 보통약관으로 풍수재위험을 담보하는 보험종목은 화재보험중 특수건물에 대한 신체손해배상특약부화재보험과 상해보험, 건설공사보험 및 해상보험중 일부가 있으며 보통화재보험 및 장기화재보험, 동산종합보험을 비롯한 기타 가계성종합보험은 특약으로 풍수재위험을 담보하고 있다. 미국이나 일본 등도 대부분 이와같은 약관체계를 형성하고 있으며 여기서는 현재 국내에서 사용하고 있는 풍수재담보약관중 화재보험의 풍수재담보특약을 중심으로 그 도입경위 및 담보내용들을 살펴보기로 한다.

우리나라에서 풍수재담보상품이 개발된 것은 외국약관을 도입, 사용하면서부터였으며 이는 60년대 외국자본의 합작 및 투자업체로부터 all risk 담보요청에 부응하는 조치의 일환이었다.

현재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있는 F·O·C (Fire Offices' Committee) Foreign Policy Form(영문화재보험약관 : 영국식)에서는 E.C.E (Extended

# 풍수재위험

국·영문화재보험보통약관에 부대하여 판매되고 있는 특별약관의 물건별 담보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국·영문특약별 풍수재위험담보내역)

보통약관 구분	국 문			영 문				
	물건별 특별약관	풍수재 위험담보 보통약관	확장위험 담보특별 (I) (II)	특수건물 특약(특 약보험료 부담없음)	확장담보 특약	홍수 수손해 담보 특별	범람 수손해 담보 특별	진수 우손해 담보 특별
일 반	주택 일반 공장 창고	○ ○ ○ ○	△ △ △ △		△ △ △ △	○ ○ ○ ○		○ ○ ○ ○
특 수 건 물	주택 일반 공장 창고			○ ○ ○ ○	△ △ △ △	○ ○ ○ ○		○ ○ ○ ○

주) ○ : 풍수재 담보    △ : 풍재만담보

Coverage Endorsement ; 확장담보특별) 및 홍수, 범람, 우담수손해담보특별)으로, American Standard Policy(영문화재보험약관 : 미국식)에서는 지진, 우담수, 폭풍우, 홍수손해담보특별)으로 풍수재위험을 담보할 수 있도록 하였다.

국문화재보험보통약관에서 최초로 풍수재담보특별)을 첨부, 판매한 것은 1977년이었으며 이후 1984년 1월 1일부터는 의무 보험가입대상인 모든 특수건물의 보험계약에 추가보험료의 부담없이 풍수재위험을 담보하기에 이르렀다.

국문화재보험의 풍수재담보특별)에서 담보하는 위험은 태풍, 회오리바람, 폭풍, 폭풍우, 홍수, 해일, 범람 및 이와 비슷한 풍재나 수재에 의해 생긴 손해와 방재 또는 긴급피난에 필요한 조치로 보험의 목적에 생긴 손해를 보상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그러나 만조시에 얇은 해안이나 삼각주의 하구에 발생하는 높은 파도현상인 海嘯, 눈사태, 풍재 또는 수재로 생긴 파열 및 폭발손해, 지진, 분화로 생긴 손해, 도난손해는 담보하지 않는다. 그리고 제방 또는 댐이 구조상의 결함이나 하자, 자연열화로 무너지는 경우는 면책이지만 태풍 등으로 인한 붕괴손해는 보상되며 보험의 목적인 건물 또는 보험의 목적을 수용하는 건물이 풍재나 수재로 직접 파손됨으로써 보험의 목적에 생긴 손해는 보상되지만 바람이나비, 눈 등이 스며들어 생긴 손해는 면책으로 하고 있다. 한편 추위, 서리, 얼음, 눈은 풍재나 수재와 같은 자연적 變象이 아니기 때문에 보상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 3. 풍수재특약요율(협정)

풍수재위험담보특별)요율은 보험의 목적의 소재지의 등지 및 건물의 구조급별에 따라서 기본요율을 산출하며 보험기간 1년미만의 단기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보험기간에 7, 8, 9월이 포함될 때는 각월마다 10%씩 할증률을 가산하도록 되어 있다. 즉 7, 8, 9월이 포함된 6개월간의 단기계약(보험기간 : '87.5.1 ~ '87.10.30)은 6개월의 단기요율 70%에 7, 8, 9월의 할증요율 30%를 가산한 100%(년요율의 비율임)의 요율을 적용하게 되나 어떤 경우에도 100%를 초과할 수는 없다. 단기계약에서 7, 8, 9월에 특별할증을 부가하는 이유는 대부분 풍수재위험이 이 기간에 편중되고 있는 우리나라의 기후적 조건을 감안한 것이며 기본요율이 1년단위 요율이기 때문이다. 또한 풍수재담보특별)은 풍재나 수재 중 어느 한 위험을 제외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며 풍재부담보 계약인 경우는 기본요율의 80%, 수재부담보계약인 경우는 기본요율의 20%를 적용하는데 이것은 풍재와 수재의 위험구성 요인을 20 : 80으로 하여 산정된 요율로 간주하고 있기 때문이다.

기본요율에서 요율체계를 지역별 등지와 건물구조별로 분류하고 있는 것은 근본적으로 풍수재위험은 지역에 따라 큰 차이가 있고 풍수재가 발생한 경우 건물의 구조상태에 따라 손상도의 규모가 다르기 때문이다. 즉  $r = f \cdot d$  (r: 요율, f: 빈도, d: 손상도)의 공식에서 f는 지역요인이며 d는 건물상태로 볼 수 있다.

풍수재위험은 해안지방 또는 큰 강을 끼고 있는 지역이 높은 것이 일반적이며 등지의 구분도 이러한 자료를 근거로 하여 시행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경우 삼면이 바다로 둘러싸여 있고 내륙지방에도 많은 강이 있기 때문에 풍수재발생지역이 특정한 곳으로 한정되어 있지 않은 것이 통계상으로 입증되고 있다. 따라서 1986년 9월12일 화재보험요율서 개정시 풍수재특약요율도 3개 등지에서 2개 등지로 압축하여 요율체계를 간소화 하였으며 이것은 과거 25년간의 지역별 풍수재 실적을 기초로 조정된 것으로서 서울, 대구, 경북, 충남, 충북, 전북은 1등지, 부산, 인천, 경남, 전남, 경기, 강원, 제주는 2등지로 되어 있으며 금후에도 다년간의 사고실적에 따라 조정하게 될 것이다.

건물의 구조급별체계는 화재보험건물규정의 1·2급 구조를 1급, 3·4급 구조를 2급으로 축소하여 구분하고 있으며 급별, 등지별 요율수준 및 격차를 백분율로 나타내면 다음 표와 같다.

등지별 \ 급별		%	
		1 급	2 급
1 등 지		100	120
2 등 지		118	142

위의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우리나라의 풍수재담보특약요율은 지역별, 급별에 따른 격차는 크지 않으며 상당히 단순한 요율체계를 형성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우리와는 지리·기후적 여건이 다른 일본의 요율체계를 보면 풍수재위험에 대한 경우 물건소재지의 등지와 구조급별에 따라 기초요율을 산출하고 다시 해안으로부터의 거리, 지형 및 건물의 내풍조건등을 고려한 위험도 계수를 곱하여 적용요율을 산출하고 있으며 수재담보요율은 수재의 주위험이 高潮에 있는 것으로 간주되는 지역엔 고조 요율을 적용하고 기타 지역에는 수담보요율을 적용하고 있다. 고조담보요율은 물건소재지의 등지와 건물의 구조급별, 床高 및 방조제의 유무등에 따라 기초요율을 산출하고 이에 격류, 범람, 호우, 과도 등 각종 위험요소에 따른 할증, 할인을 행하여 적용요율을 산출하고 있다. 또한 수담보요율은 물건소재지 주변의 하천상태, 과거의 이재경력, 건물구조, 床高

등에 따라 적용요율을 산출한다.

#### 4. 맺는말

금년을 비롯해서 근래 풍수재사고는 다발하는 현상이지만 풍수재위험을 담보하는 보험계약건수는 미미한 것이 작금의 실정이다. 그러나 보험계약의 실적에 비해 보험금지급실적은 높은 손해율을 시현하고 있으며 최근 4년동안의 통계를 보면 이런 현황을 잘 보여주고 있다.

풍수재 보험실적

기간 : 1982~1985 (단위 : 천원)

구분 물건	계약상황		손해상황		손해율 (%)
	건수	보험료	건수	보험금	
주 택	273	12,903	15 (2,693)	59,414 (516,705)	460
일 반	1,543	272,297	42 (62)	535,200 (948,639)	197
공 장	1,225	154,723	70 (98)	2,323,725 (2,840,721)	1,502
창 고 총 팔	2 3,043	1,487 441,410	- 127 (2,853)	- 2,918,339 (4,306,065)	- 661

주) ( )의 수치는 특수건물의 풍수재보험금지급 실적을 포함한 것임.

더우기 특수건물의 경우 '84.1.1.부터 풍수재위험을 화재 및 낙뢰위험과 같이 화재보험보통약관으로 담보할 수 있도록 기본담보범위를 확장하였기 때문에 금년의 경우 별도의 특약보험료 부담없이 지급되는 풍수재보험금은 약 1백20억원 정도로 추산되며 특약담보로 지급할 보험금은 약2백억원을 상회할 것으로 예상됨으로 '87회계연도 화재보험의 예정수입보험료의 약30%정도가 풍수재보험금으로 충당될 전망이다. 이와같은 현상은 앞으로도 예측을 불허하는 것이기 때문에 업계에서는 풍수재담보 상품의 내용을 재검토하여 미래를 대비하도록 해야 할 것이며 收支相等이 가능할 수 있도록 계약고를 증대할 수 있는 방안도 아울러 강구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본다. 그리고 사회적, 경제적 안정의 측면에서도 보험계약자 및 국민의 인식제고와 더불어 가입률이 향상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적정한 요율수준유지에도 많은 관심을 기울여야 할 것이며 그렇게 함으로써 불가항력적인 자연재해에 대하여 최소한의 경제적 보상을 담보할 수 있는 재해보험이 우리 사회에 정착되리라 믿는다. ☐